

와우패스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 2급 세법 핵심요약

| 시험 직전 꼭 봐야 할 세법 핵심 정리 |



전산세무 2급 세법 최종정리

- 핵심요약을 먼저 읽고, 이어지는 O/X 문장으로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틀린 문장은 왜 틀렸는지 이유를 짧게 정리해 두면 실전에서 같은 함정을 피하기 쉽습니다.
- 세법은 숫자와 요건이 중요하므로 비슷한 문장은 비교하면서 읽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총칙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자등록,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등 기본 틀을 먼저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재화·용역·수입, 간주공급, 건설업·부동산임대 등 과세대상 판단 문장을 묶었습니다.

공급시기·영세율·면세

공급시기와 영세율·면세의 차이를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수정세금계산서, 선발급·월합계 발급 등을 집중 정리합니다.

매출·매입세액 / 신고·납부

매입세액 불공제, 의제매입세액, 환급, 예정·확정신고, 폐업신고를 묶어 마무리합니다.

소득세

총칙, 종합소득금액 계산, 원천징수, 공제, 신고·납부를 O/X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제113~126회 최신기출로 마무리하는 세법 최종정리

제127회 전산세무 2급 시험대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총칙

학습 포인트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납세의무자, 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총괄납부 같은 제도적 틀을 묶은 영역입니다. 정의·원칙·적용대상을 구분하는 문장이 많아 기본 개념 정리가 중요합니다.

1. 납세의무자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의무자
- 시험 시작점 = “누가 세금을 내는 주체인지” 판단

2.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1 월 1 일 ~ 12 월 31 일
- **일반과세자**: 제 1 기 1 월 1 일 ~ 6 월 30 일 / 제 2 기 7 월 1 일 ~ 12 월 31 일
- 신규 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폐업: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3.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
- 원칙: **사업 개시일부터 20 일 이내** 신청
-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전에도** 신청 가능
- 시험에서는 “20 일”과 “사업장마다”가 핵심 문구

4. 사업자단위 등록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 단위 등록**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추가 사업장 개설 시에도 변경등록 규정 존재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와 연결 출제 맞음

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는 크게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구분
- 일반과세자 = 반기 과세
- 간이과세자 = 1 년 과세
- 문제에서는 신고주기, 세액계산 방식까지 이어짐

6. 부가가치세의 성격

- **간접세**
-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에 과세
- 최종 소비자가 사실상 세부담
- 전단계세액공제 구조 이해 필요

7. 과세원칙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 국내 소비에 과세
- 수출은 영세율, 수입은 과세로 연결
- 총칙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문장

8. 시험장 체크순서

- ① 사업자인가
- ② 일반과세자인가, 간이과세자인가
- ③ 과세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 ④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인가
- ⑤ 사업장별 등록인지, 사업자단위 등록인지

9. 시험장 암기 문장

- **사업자 + 수입자 = 납세의무자**
- **일반 2 기, 간이 1 년**
- **사업자등록 20 일**
- **사업장마다 등록**
- **소비지국 과세원칙**

24 년 제 114 회 기출

00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간접세이며,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X)

해설 우리나라는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4 년 제 117 회 기출

002.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은 본점만 가능하며 지점은 선택할 수 없다. (X)

해설 주사업장총괄납부 시 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뿐만 아니라 지점(분사무소)도 주사업장으로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4 년 제 117 회 기출

00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004.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직매장 반출)으로 보지 않는다. (O)

25 년 제 119 회 기출

00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에 매출액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X)

해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5 년 제 121 회 기출

006.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이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007.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구분된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008. 하치장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009. 사업자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O)

24 년 제 114 회 기출

010.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이 아닌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학습 포인트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래인지처럼 '무엇이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거래 실질을 읽는 연습이 핵심입니다.

1. 기본 구조

-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만 과세

- 사업자가 사업상 공급한 것인지 먼저 판단

2. 재화의 공급

- 재화: 물건 + 권리
- 일반적인 판매, 교환, 현물출자 = 재화의 공급
-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판매 포함
- 자기생산·취득 재화의 **개인적 사용, 증여, 사업상 무상 제공** → 간주공급 검토
- 폐업 시 잔존재화 → 간주공급 대상

3. 용역의 공급

- 재화 이외의 경제적 가치 제공
- 대표 예시
 - 건설업
 - 운수업
 - 숙박업
 - 음식점업
 - 부동산임대업 및 서시스업 전반
- 자기가 자재 부담해도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

4. 재화의 수입

-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
-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문제 자주 연결

5. 부수재화·부수용역

- 주된 거래에 딸려가는 것은 주된 거래에 따라감
-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붙는 운송·포장 등 → 재화 공급에 포함될 수 있음
- 시험에서는 **주된 거래가 재화인지 용역인지** 먼저 판단

6. 과세 여부 판단 순서

- 사업자인가
- 국내거래인가
- 재화/용역/수입 중 무엇인가
-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인가
- 세금계산서·공급시기 문제로 이어지는가

7. 자주 나오는 함정

- 건설업 → 재화 아님, **용역**
- 부동산임대업 → 재화 아님, **용역**
- 단순 보관시설(하치장) → 사업장 여부와 연결
- 자기 사업장 간 반출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같이 봐야 함
- 폐업 시 잔존재화 → 실제 판매 없어도 간주공급 가능

8. 시험장 암기 포인트

- **재공수**
- 재화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 “건설·임대·숙박·음식” → 용역
- “폐업 잔존재화, 개인적 사용, 무상 제공” → 간주공급 체크

25 년 제 123 회 기출

011.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X)

해설 건설업은 자재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25 년 제 123 회 기출

0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O)

25 년 제 123 회 기출

013.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O)

25 년 제 123 회 기출

014.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포함된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015.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016.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O)

공급시기

학습 포인트 재화·용역이 언제 공급된 것으로 보는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위탁판매, 기한부판매처럼 시점 판단이 자주 출제됩니다.

1. 기본 원칙

- 공급시기 = 언제 매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
- 세금계산서 발급시점, 과세기간 귀속, 신고시기와 바로 연결
- 시험에서는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구분이 핵심

2. 재화의 공급시기

- 원칙: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사실상 사용·수익하게 되는 때도 포함
- 수출재화: 선적일 또는 기적일 중심으로 정리
-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하는 때

3. 용역의 공급시기

- 원칙: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임대용역처럼 기간 경과에 따라 공급되는 거래 자주 출제
- “한 번에 끝나는 용역”인지 “계속 공급”인지 먼저 구분

4. 자주 나오는 특수 형태

- 할부판매: 계약 형태보다 **실제 인도·사용 가능 시점** 체크
- 조건부·기한부 판매: **조건 성취 / 기한 도래** 시점 주의
- 위탁판매: **수탁자가 실제 공급한 때**
- 무인판매기: **현금을 꺼내는 때** 자주 함정
- 장기할부판매는 소득세와 헛갈리지 않게 구분

5. 세금계산서와 연결

- 원칙: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선발급, 월합계, 다음 달 10 일까지 발급 가능한 경우 존재
- 공급시기 틀리면 세금계산서 문제까지 같이 틀리기 쉬움
- 문제 풀 때 공급시기 먼저, 세금계산서 나중에 판단

6. 시험장 판단 순서

- 재화인지 용역인지
- 일반거래인지 특수거래인지
- 인도일 / 완료일 / 대가수취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까지 연결되는지 확인

7.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수출 = 계약일 아님, **선적일 중심**
- 폐업 잔존재화 = 실제 사용일 아님, **폐업일**
- 위탁판매 = 위탁자가 아니라 **실제 공급 시점**
- 계속적 용역 = 완료일 하나로 보지 말고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소득세 수입시기 혼동 금지

8. 시험장 암기 문장

- **재화는 인도, 용역은 완료**
- **계속용역은 받기로 한 때**
- **수출은 선적**

24 년 제 117 회 기출

017.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직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또는 기적일)이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018. 폐업 시 잔존재화(간주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비했을 때이다. (X)

해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4 년 제 117 회 기출

019. 위탁판매의 경우(수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실제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한 때이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020.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무인판매기에 동전을 투입하거나 물건이 배출되는 때이다. (X)

해설 무인판매기의 경우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수(꺼내는)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24 년 제 114 회 기출

021. 예정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여 중복 신고하지 않는다. (O)

24 년 제 114 회 기출

022. 신규 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X)

해설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25 년 제 119 회 기출

023. 기한부 판매(조건부 판매)의 경우, 재화를 인도한 날이 아니라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O)

25 년 제 124 회 기출

024.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작성한다. (X)

해설 환입은 반품된 날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합니다.

영세율과 면세

학습 포인트 영세율 적용 요건, 면세와의 차이, 상호면세주의, 내국신용장 등 수출 관련 논점을 묶었습니다. 영세율은 과세사업자라는 점을 특히 구분해야 합니다.

1. 공통점

- 둘 다 매출세액 계산 시 0
- 겉으로 보면 둘 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 보임
- 시험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로 구분

2. 영세율

- 과세사업자
- 세율만 0%
- 매출세액 = 0
- 매입세액 = 공제 가능
- 환급 가능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신고의무 있음
- 대표 예시
 - 수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일정한 국외제공용역

- 상호면세주의 적용 거래 일부

3. 면세

- 부가가치세 자체를 면제
- 면세사업자
- 매출세액 없음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 대표 예시
 - 토지
 -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일부
 - 의료·교육 관련 면세 항목 일부
- 시험에서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자주 출제

4. 가장 중요한 차이

- 영세율 = 과세사업
- 면세 = 면세사업
- 영세율 → 매입세액 공제 ○
- 면세 → 매입세액 공제 X
- 영세율 → 환급 가능
- 면세 → 환급 불가
-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포인트

5. 면세포기

- 원칙: 면세사업은 면세
- 예외: 일정한 경우 **면세포기 신고** 가능
-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 전환
- 이 경우 신고·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문제로 연결
-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 필요” 유형 자주 나옴

6. 영세율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수출 = 영세율
- 국내거래라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 영세율
-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협력의무 면제 아님
- 첨부서류 누락 시 영세율 적용 문제 출제 가능
-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문장 반복 암기 필요

7. 면세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토지 = 면세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제 불가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가능성 있음
- 면세와 비과세를 혼동하지 않기

8. 시험장 암기 문장

- 영세율 = 과세, 면세 = 비과세처럼 취급 아님
- 영세율은 환급, 면세는 불공제
- 수출은 영세율
- 토지는 면세

24 년 제 117 회 기출

02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상호면세주의)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026.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X)

해설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세율 0%)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5 년 제 120 회 기출

027.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상호면세주의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X)

해설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주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4 년 제 117 회 기출

028.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O)

25 년 제 120 회 기출

029.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국외제공용역)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25 년 제 120 회 기출

030. 재화의 수출 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된 수산물은 내국물품 수출로 보지 않는다. (X)

해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며,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입니다.

24 년 제 117 회 기출

031.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O)

25 년 제 120 회 기출

03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내국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도 포함된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033. 부가가치세법상 '상호면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034.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O)

25 년 제 120 회 기출

035.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가 면제된다. (X)

해설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제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5 년 제 120 회 기출

036.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O)

세금계산서

학습 포인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발급 시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등 문서 처리 규정을 다룹니다. 실무상 암기 포인트가 많은 영역입니다.

1. 기본 개념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증빙
-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 매출세액·매입세액 공제의 출발점
- 면세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2. 언제 발급

-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
- 예외: 선발급 가능
-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가능
- 예외: 일정한 경우 다음 달 10 일까지 발급 가능
- 문제 풀 때는 공급시기 먼저, 발급시기 나중 순서

3.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 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세액
- 작성연월일
- 이 부분이 틀리면 매입세액 공제 문제로 바로 연결

4. 자주 나오는 함정

- 공급받는 자의 **성명·명칭** =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연월일 혼동 주의
- 임의적 기재사항 오류는 원칙적으로 치명적 오류 아님
-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 여부까지 검토

5. 수정세금계산서

- 사유별로 작성일자 기준 다름
- 계약 해제·환입·공급가액 증감·기재사항 착오 구분
- 기재사항 착오 시 **당초분 취소(-) + 정정분(+)** 형태 자주 출제
- “언제 기준으로 수정하느냐”가 핵심

6.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의무발급 대상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요건 충족 시 의무발급
- 2026 기준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 천만원 이상**

7. 위탁·대리 거래

- 위탁판매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지** 자주 출제
- 위탁판매의 실질 공급주체 판단 필요
- 비고란 기재사항과 명의 구분 문제 자주 출제
- 명의 틀리면 세금계산서 문제로 연결

8. 시험장 체크순서

- ① 과세거래인가
- ② 공급시기 언제인가
- ③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 ④ 필요적 기재사항 맞는가
- 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인가

9. 시험장 암기 문장

- 공급시기에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4 개
-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24 년 제 113 회 기출

037.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착오로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오류를 발견한 날'로 한다. (X)

해설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그대로 기재하여 마이너스(-)로 발급합니다.

24 년 제 113 회 기출

038.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적힌 경우에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O)

25 년 제 119 회 기출

039.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받은 대가보다 더 큰 금액(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다. (X)

해설 원칙적으로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받은 대가의 범위 내'에서만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습니다.

25 년 제 119 회 기출

040. 거래처별로 1 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합산하여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O)

25 년 제 120 회 기출

041.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선발급 또는 사후발급(다음 달 10 일)이 인정된다. (O)

25 년 제 120 회 기출

042.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O)

25 년 제 120 회 기출

043.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X)

해설 위탁판매의 주체는 위탁자이므로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며, 비고란에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합니다.

25 년 제 121 회 기출

044. 필요적 기재사항(세액 등)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차액만큼만 1 장을 발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수정발급 방법이다. (X)

해설 기재사항 착오 시에는 당초분 취소(-) 1 장과 정확한 내용(+) 1 장, 총 2 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25 년 제 124 회 기출

045. 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실제로 재화가 인도된 날인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O)

25 년 제 124 회 기출

046.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모두 포함된다. (X)

해설 공급하는 자는 '등록번호와 성명/명칭'이 필요하지만,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25 년 제 124 회 기출

047.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약의 해제'와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는 모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O)

25 년 제 121 회 기출

048. 법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 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X)

해설 법인사업자는 사업 규모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학습 포인트 과세표준, 매입세액 불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수입 부가가치세 등 세액 계산의 핵심 요소를 모았습니다.

1. 기본 구조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많으면 납부
- 매입세액 많으면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계산의 핵심 공식

2. 매출세액

- 과세거래의 **공급가액** × 10%
- 영세율 거래 = 세율 0%, 매출세액 0
- 간주공급도 매출세액 계산 대상 가능
- 대손은 과세표준을 직접 깎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로 처리

3. 매입세액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 원칙: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연결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

4.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5.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는 면세
- 토지 취득, 형질변경, 택지 조성 등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 토지 가치 증가, 취득원가 구성 비용도 포함
- 시험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매우 자주 출제

6.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 + 면세사업 겸영 시 발생
- 실지귀속 구분 안 되면 **안분 계산**
- 전부 공제도, 전부 불공제도 아님
- “겸영”이라는 말 나오면 공통매입세액 의심

7.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검토

- 모든 사업자가 되는 것 아님
- 업종·사업자 유형 요건 확인 필요
- 전산세무 2 급에서는 음식점업 등 대표 업종 중심으로 출제

8. 대손세액공제

-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확정되면 검토
- 과세표준 직접 차감 아님
- **매출세액에서 차감**
- “대손금 = 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구분해서 보기

9. 간이과세자와 연결 포인트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전면적 매입세액공제 구조 아님
-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가능
- 전환일 현재 재고품 신고 문제 자주 출제

10. 시험장 체크순서

- ① 과세거래인가
- ② 매출세액 계산 대상인가
- ③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 ④ 불공제 사유 있는가
- ⑤ 공통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공제 해당하는가

11. 시험장 암기 문장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토지·접대성·사업무관 = 불공제**
- **겸영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 **대손은 과표 차감 아님, 대손세액공제**

24 년 제 113 회 기출

049.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X)

해설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24 년 제 113 회 기출

050.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X)

해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입니다.

25 년 제 119 회 기출

051. 간이과세자도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X)

해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인 및 일반과세자 중 일부 업종만 가능)

25 년 제 119 회 기출

05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가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한다. (X)

해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가 맞습니다.

25 년 제 123 회 기출

053. 법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음식점업이다. (O)

24 년 제 114 회 기출

054.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O)

25 년 제 123 회 기출

055.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면세 농산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O)

25 년 제 119 회 기출

056.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057.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058. 외상판매 후 그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한다. (X)

해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대손세액공제' 절차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학습 포인트 예정신고·확정신고, 예정고지, 환급, 폐업 신고, 조기환급 같은 신고·납부 절차 중심 문항입니다. 기한과 절차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1. 기본 구조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1 기, 2 기
- 제 1 기 = 1 월~6 월
- 제 2 기 = 7 월~12 월
- 신고는 예정, 확정 구조로 이해
- 전산세무 2 급은 “과세기간-신고기간-납부기한” 연결이 핵심

2. 일반과세자 신고 흐름

- 1 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 = 1 월~3 월
- 1 기 확정신고 대상 기간 = 1 월~6 월

- 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 = 7월~9월
- 2기 확정신고 대상 기간 = 7월~12월
- 확정신고는 각 반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3. 신고·납부 기한

- 1기 예정 = 4월 25일
- 1기 확정 = 7월 25일
- 2기 예정 = 10월 25일
- 2기 확정 = 다음 해 1월 25일
- 시험에서는 숫자 자체보다 “몇 월 25일” 구조로 외우는 게 빠름

4.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 하는 것 아님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중심
- 일부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고지·신고 구분 문제 자주 출제
- 법인이라고 항상 무조건 예정신고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음
- “소규모 법인사업자” 문구 나오면 예정고지 여부 체크

5. 간이과세자 신고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구조가 다름
-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흐름으로 이해
- 다만 유형전환, 포기,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과세기간이 쪼개질 수 있음
- 시험에서는 “그 해 과세기간이 2개냐 3개냐” 식으로 자주 출제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주기를 반드시 분리해서 암기

6. 환급

-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구분
- 일반환급 = 확정신고 후 환급
- 조기환급 = 수출, 영세율, 사업용 설비 취득 등 일정 사유 있을 때 가능
-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
-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이내**가 핵심

7. 조기환급 포인트

- 수출 등 영세율 적용 사업자
-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 조기환급은 매 과세기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도 나올 수 있음

- 시험에서는 “누가 신청 가능한지”와 “며칠 안에 환급인지”를 같이 묻음

8. 폐업 시 신고

- 폐업하면 일반 신고와 별도 특례 적용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 일**까지 신고·납부
- 폐업 문제는 잔존재화 공급시기와 같이 엮여 출제 빈도 높음
- 폐업 = 끝이 아니라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발생**으로 정리

9. 시험장 체크순서

- ① 일반과세자인가, 간이과세자인가
- ② 예정신고인가, 확정신고인가
- ③ 예정고지 대상인가
- ④ 환급인가, 납부인가
- ⑤ 폐업·유형전환 같은 특수상황인가

10. 시험장 암기 문장

- 부가세 신고기한 = 대부분 25 일
- 일반환급 30 일, 조기환급 15 일
- 폐업하면 다음 달 25 일
- 개인은 예정고지, 법인은 예정신고 중심으로 출발

24 년 제 113 회 기출

059.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060.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 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061.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O)

24 년 제 114 회 기출

062.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X)

해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 억 5 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24 년 제 114 회 기출

063. 모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의 고지 납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X)

해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납부' 대상입니다. 사업 부진(직전 대비 1/3 미달) 등의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5 년 제 120 회 기출

064. 직전 과세기간 6 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 억 5 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된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065. 일반환급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신고기한이 지난 후 25 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X)

해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 일 이내에 환급하며, 25 일 이내는 신고·납부 기한을 의미합니다.

24 년 제 115 회 기출

066.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 1 기(1 월~6 월)와 제 2 기(7 월~12 월)로, 1 년에 총 2 개가 원칙이다. (O)

24 년 제 115 회 기출

067.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첫 과세기간은 변경되는 해의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이다. (X)

해설 유형 전환 시, 변경되는 해의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가 간이과세자로서의 첫 과세기간이 됩니다.

24 년 제 115 회 기출

068.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과세기간이 3 개가 될 수 있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069.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총괄납부를 하려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X)

해설 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 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25 년 제 122 회 기출

070. 폐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 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071. 조기환급은 수출(영세율)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산(설비)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072. 조기환급 신고 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 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07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신설 또는 폐업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X)

해설 사업자단위과세자라 하더라도 종된 사업장의 신설, 이전, 폐업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등록사항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4 년 제 113 회 기출

07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며, 예정신고 시 바로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075.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 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O)

소득세법

소득세법 총칙

학습 포인트 소득세의 과세기간,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열거주의 등 소득세 체계 전반을 다룹니다. 전체 구조를 잡는 입문 성격의 영역입니다.

1. 과세대상 소득 구분

- 거주자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 =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시험에서는 "무슨 소득으로 분류되는가"가 중요

2. 과세방식

-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즉,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 금융소득은 포괄적으로 잡는다는 점 자주 출제

3.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달라짐
- 시험에서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먼저 구분해야 함

4. 거주자 과세범위

- 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과세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
- 비거주자는 국내 발생 소득만 과세 원칙

5. 과세기간

- 원칙: **1 월 1 일 ~ 12 월 31 일**

- 사업자가 중간에 개업·폐업해도 원칙적 과세기간은 1 년
- 예외: 사망
- 예외: 출국으로 비거주자 되는 경우
- 시험에서는 “과세기간이 줄어드는 예외”를 자주 묻음

6. 과세기간 예외

- 사망 시 = **1 월 1 일 ~ 사망일**
- 출국으로 비거주자 되는 경우 = **1 월 1 일 ~ 출국일**
- “전일”로 착각하기 쉬움
- 출국 당일까지 포함하는지 주의

7. 분류과세·종합과세·분리과세

- 종합과세 = 여러 종합소득 합산 후 과세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처럼 따로 계산
-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는 소득
- 시험에서는 금융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과 연결해서 자주 출제

8. 금융소득 기본 포인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 연간 합계 **2,000 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 2,000 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숫자 하나로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

9. 시험장 체크순서

- ①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 ② 어떤 소득 종류인가
- ③ 종합과세인가, 분류과세인가, 분리과세인가
- ④ 과세기간 예외 있는가
- ⑤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

10. 시험장 암기 문장

- 거주자 = 전 세계 소득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만
- 종합소득 6 종
- 퇴직·양도 = 분류과세

25 년 제 124 회 기출

07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O)

25 년 제 123 회 기출

077.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X)

해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24 년 제 113 회 / 25 년 제 124 회 기출

078.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 창출을 위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된다. (O)

25 년 제 123 회 기출

079.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연간 2,000 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O)

25 년 제 123 회 기출

080. 금융소득이 연간 4,000 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X)

해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은 연간 2,000 만 원입니다.

25 년 제 124 회 기출

08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6 개월 단위이다. (X)

해설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25 년 제 124 회 기출

08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 월 1 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O)

25 년 제 124 회 기출

083.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 월 1 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X)

해설 출국 시 과세기간은 1 월 1 일부터 출국한 날(당일)까지입니다.

24 년 제 113 회 기출

084.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자·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 (O)

25 년 제 124 회 기출

085.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O)

25 년 제 124 회 기출

086.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이다. (O)

25 년 제 123 회 기출

087.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X)

해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항목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 및 정산합니다.

24 년 제 118 회 기출

088. 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O)

종합소득금액 계산

학습 포인트 수입시기, 기타소득, 결손금,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재료를 모았습니다. 계산 전 단계의 분류와 귀속 판단이 중요합니다.

1. 기본 구조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의 합계
- 그다음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 즉, 소득금액 계산 → 공제 적용 → 과세표준 계산 순서

2. 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개념이 거의 없음
- 그래서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으로 바로 가는 구조로 외우면 빠름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연 2,000 만원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함.

3.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시험 핵심 = 무엇이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지, 무엇이 필요경비인지 구분
-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 가사용 소비, 선세금 안분 같은 문장형 함정 자주 출제

4.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급여 전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아님
- 근로소득은 구조상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문제 자주 출제

5. 연금소득

-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
-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적연금,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 차이보다 전산세무 2 급에서는 **종합소득 6 종 중 하나**라는 틀을 먼저 잡는 게 중요

6.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강연료, 사례금, 상금, 알선수수료 등 자주 출제
- 필요경비를 실제경비가 아니라 **의제율**로 계산하는 문장형 문제가 자주 출제

7. 총수입금액 판단

- 총수입금액 = 단순히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 뜻하지 않음
- 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 가사용 소비, 일부 간주 항목도 포함 가능
- 특히 사업소득은 **실제 수령액보다 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

8. 수입시기와 연결

- 이자소득 수입시기 = 약정에 따른 지급일·상환일 기준 문장 자주 출제
- 사업소득도 거래 유형에 따라 수입시기 다름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소득세 수입시기를 섞어서 내는 함정 자주 출제

9. 결손금

-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결손금 가능
- 반면 근로소득은 구조상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
-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의 공제 가능 여부까지 연결해서 출제

10. 시험장 체크순서

- ① 어떤 소득 종류인가
- ② 총수입금액이 얼마인가
- ③ 필요경비 또는 공제가 있는가
- ④ 소득금액으로 얼마가 남는가
- 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가, 분리되는가

11. 시험장 암기 문장

- 이배사근연기
- 이자·배당은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
- 사업·기타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먼저, 공제는 그다음

24 년 제 115 회 기출

089.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 이자 등)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다. (O)

24 년 제 115 회 기출

090.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O)

24 년 제 115 회 기출

091. 소득세법상 상품의 장기할부판매 수입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X)

해설 소득세법에서 상품의 장기할부판매 수입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원칙입니다. (부가세법과 차이점 핵심 문항)

24 년 제 115 회 기출

092. 부동산 등의 양도 또는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O)

24 년 제 116 회 기출

093.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O)

24 년 제 116 회 기출

094. 국가로부터 받는 국세환급가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다. (X)

해설 국세환급가산금은 보상적 성격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비과세).

24 년 제 116 회 기출

095. 사업자가 판매용 재고자산을 본인의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소비했을 때의 가액(시가)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096.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는 각각 비과세되는 소득이 존재한다. (O)

24 년 제 115 회 기출

097.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받은 금액의 100 분의 60 을 필요경비로 인정(의제)한다. (X)

해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일반적인 강연료 등은 60%입니다.

24 년 제 115 회 기출

098.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O)

24 년 제 115 회 기출

099.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O)

24 년 제 115 회 기출

100.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O)

24 년 제 118 회 기출

101.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X)

해설 '저작자 본인'이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이며, 저작자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아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입니다.

24 년 제 118 회 기출

102.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O)

24 년 제 118 회 기출

103. 일시적인 강연료로 12 만 원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과세최저한 이하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O)

해설 강연료 12 만 원에서 필요경비 60%(7.2 만 원)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4.8 만 원이므로, 건당 5 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25 년 제 123 회 기출

104.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 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105.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등)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106.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가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107.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과거 이월결손금도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먼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X)

해설 당해 연도 발생 결손금을 각 소득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소득이 있을 때 비로소 과거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24 년 제 113 회 / 25 년 제 124 회 기출

108. 결손금 소급공제(직전 연도 세액 환급)는 모든 사업자가 가능하며, 업종에 제한이 없다. (X)

해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24 년 제 116 회 기출

109. 부동산 임대와 관련 없는 일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O)

25 년 제 124 회 기출

110. 주거용 건물 임대업(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상가 임대업과 달리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O)

25 년 제 124 회 기출

11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구조적으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O)

원천징수

학습 포인트 급여 지급시기 의제, 이자지급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처럼 '언제·누가 원천징수하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기본 개념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
- 실제 납세자와 세금을 떼는 자가 다름
- 시험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언제 원천징수하는지가 핵심

2. 원천징수의무자

- 개인도 가능
- 법인도 가능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의무 발생
- “법인만 한다”라고 보면 틀림

3. 자주 나오는 원천징수 대상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사업소득 일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 시험에서는 특히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 중심

4. 원천징수 시기 기본

- 원칙: 실제 지급하는 때
- 돈을 주는 날 원천징수
- 귀속연도와 지급일이 다를 수 있음
- “귀속 기준”과 “지급 기준”을 헷갈리지 않기

5.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 1월~11월분 급여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안 주면 → 12월 31일 지급으로 봄
-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안 주면 → 다음 해 2월 말일 지급으로 봄

-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
- 12 월분과 1~11 월분 규정 구분이 핵심

6. 급여 예시로 정리

- 5 월분 급여를 5 월 31 일 지급 → 5 월 31 일 원천징수
- 7 월분 급여를 8 월 10 일 지급 → 8 월 10 일 원천징수
- 11 월분 급여를 다음 해 1 월까지 안 줌 → 12 월 31 일 원천징수
- 12 월분 급여를 다음 해 3 월까지 안 줌 → 다음 해 2 월 말일 원천징수
- 이 4 개 예시 패턴을 통째로 암기

7. 연말정산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액 확정
-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까지 연결
- 두 곳 이상 근무했다라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면 확정신고 면제 가능
- 합산 안 하면 5 월 확정신고 검토

8. 확정신고와 연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보통 확정신고 불필요
- 근로 + 다른 종합소득 함께 있으면 → 합산 확정신고 가능성
- 금융소득 2,000 만원 초과하면 → 종합과세로 확정신고
- 공적연금 + 근로소득도 같이 출제

9.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 근로·퇴직·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다음 해 3 월 10 일**
-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같은 구조로 출제

10. 자주 틀리는 포인트

- 귀속월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 아님 → **지급일 기준**
- 다만 근로소득은 지급시기 의제 규정 존재
-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 연말정산 아님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구조 자주 출제

11. 시험장 체크순서

- ① 어떤 소득인가

- ② 원천징수 대상인가
- ③ 실제 지급일이 언제인가
- ④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있는가
- ⑤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까지 연결되는가

12. 시험장 암기 문장

- 원천징수 = 지급할 때
- 1~11 월분 미지급 = 12 월 31 일
- 12 월분 미지급 = 다음 해 2 월 말일
- 지급명세서 3 월 10 일
- 사업·기타 간이지급명세서 = 다음 달 말일

24 년 제 116 회 기출

112. 5 월분 급여를 해당 월인 5 월 31 일에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지급일인 5 월 31 일이다.

(O)

24 년 제 116 회 기출

113. 7 월분 급여를 다음 달인 8 월 10 일에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귀속 월인 7 월말이 아니라 지급일인 8 월 10 일이다. (O)

24 년 제 116 회 기출

114. 11 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1 월 31 일에 미뤄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12 월 31 일로 간주(의제)한다. (O)

24 년 제 116 회 / 25 년 제 120 회 기출

115. 12 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3 월 31 일에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귀속 연도 말인 12 월 31 일이다. (X)

해설 12 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2 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다음 연도 2 월 말일'을 지급 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25 년 제 120 회 기출

116. 7 월분 급여를 당해 연도 12 월 31 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12 월 31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O)

25 년 제 120 회 기출

117. 1 월분 급여를 6 월 30 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상반기 종료일인 6 월 30 일을 지급 시기로 본다. (X)

해설 1 월~11 월분 급여를 12 월 31 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만 12 월 31 일을 의제일로 보며, 6 월 30 일 의제 규정은 없습니다.

25 년 제 120 회 기출

118.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O)

25 년 제 120 회 기출

119.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O)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학습 포인트 기본공제·추가공제·부녀자공제·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등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문구를 정확히 읽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1. 큰 흐름

-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공제 차감
- → 과세표준
- → 세율 적용
- → 산출세액

2. 종합소득공제

- 대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항목
- 세율 적용 전에 차감

3. 기본공제

- 1 명당 **150 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
- 부양가족은 **나이요건 + 소득요건** 함께 봄
-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 판단이 핵심

4. 기본공제 자주 보는 대상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입양자 등
- 문제는 “누가 포함되는가”로 많이 출제

5.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추가공제 가능
- 경로우대자: **70 세 이상, 100 만원**
- 장애인: **200 만원**
- 부녀자공제: **50 만원**
- 한부모공제: **100 만원**

6. 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 부양가족 + 종합소득금액 3 천만원 이하
- 한부모공제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있는 경우
-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 중복공제 안 됨.

7. 공제 판단 포인트

- 기본공제 가능 여부 먼저 판단
- 그다음 추가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의 “위에 얹는 구조”
- 기본공제 안 되면 추가공제도 안 됨.

8.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종합소득공제와 위치가 다름
- 시험에서는 공제와 세액공제를 섞어서 냄
- “무엇을 빼는 단계인지” 먼저 구분

9. 자주 나오는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출제 많음.

10.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중심으로 출제
- 일반 보장성보험료: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
- 각각 한도 있음.

11.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와 별개로 보는 부분이 있어 자주 헷갈림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심
- 공제율, 총급여 대비 기준, 한도 문장형 출제 많음
- “누구를 위해 쓴 의료비인가”를 먼저 확인.

12.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15%**
- 장학금 등 비과세·보조받은 금액은 제외
- 나이 제한 예외 문장 자주 출제
- 학교 종류별 공제 범위도 함정.

13. 시험장 자주 틀리는 포인트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혼동
-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혼동
- 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중복 적용 착각
- 장학금 받은 교육비를 전액 공제한다고 착각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전제가 필요.

14. 시험장 체크순서

- ① 누구에 대한 공제인가
- ②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 ③ 추가공제까지 가능한가
- ④ 종합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
- ⑤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인가

15. 시험장 암기 문장

- 기본공제 150
- 경로 100, 장애 200
- 부녀 50, 한부모 100
-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만
- 공제 먼저, 세액공제 나중

24 년 제 116 회 기출

120.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O)

24 년 제 116 회 기출

121.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중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X)

해설 장학금 등으로 보조받은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 년 제 116 회 기출

122.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 만 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O)

24 년 제 116 회 기출

123.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

25 년 제 119 회 기출

124.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X)

해설 배우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며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5 년 제 119 회 기출

125.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O)

25 년 제 119 회 기출

126.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부, 올케 등)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X)

해설 형제자매 본인까지만 대상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5 년 제 119 회 기출

127.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128. 직계비속(자녀 등)은 만 20 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129. 기본공제 대상자가 70 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연 100 만 원을 공제하는 경로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130.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금액 100 만 원' 요건은 종합소득금액만을 의미한다. (X)

해설 소득금액 100 만 원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25 년 제 122 회 기출

131.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X)

해설 부녀자공제(연 50 만 원)와 한부모공제(연 100 만 원)가 중복될 경우,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25 년 제 119 회 기출

132.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판정 시 나이 제한이 없는 공제 항목은 배우자공제와 장애인공제이다. (O)

제 124 회 기출

133.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고, 그 후에 세액공제를 차감한다. (O)

25 년 제 122 회 기출

134.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만 20 세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O)

소득세 신고와 납부

학습 포인트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성실신고확인, 폐업 시 신고 등 신고 절차와 납부 마무리를 다룹니다.

1. 기본 구조

-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 신고와 납부를 함께 봄
- 시험에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 언제까지인지 / 예외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원칙: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법문 기준은 5월 31일까지
- 실제 세무일정은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밀릴 수 있음
- 시험은 보통 **5월 31일**로 외우면 됩니다.

3. 누가 신고하나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득 있으면 일단 신고 검토”가 기본
- 다만 연말정산 등으로 예외가 생깁니다.

4.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대표 예외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두 곳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완료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소득만 있는 경우
- 시험에서는 “확정신고 의무 면제” 문장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5. 신고해야 하는 대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공적연금 + 근로소득 등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했으니 끝”이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일반 신고기한보다 늦음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2026 세무일정에도 2025년 귀속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6월 30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7. 원천세 신고·납부와 연결

- 원천징수한 세액은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시험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원천세 신고기한을 섞어 냄
- 종합소득세 = 5월
- 원천세 = 다음 달 10일
- 둘을 분리해서 외워야 합니다.

8.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퇴직·사업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다음 해 3월 10일**
- 이자·배당은 별도 기한 문제로 자주 출제
-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보통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기한 숫자 문제는 전산세무 2급 단골 포인트입니다.

9. 폐업·사망·출국과 연결

- 사망 = 과세기간 단축
- 출국으로 비거주자 = 과세기간 단축
- 폐업은 부가가치세처럼 과세기간이 잘리는 구조가 아님
-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년 과세기간이라는 틀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10.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연말정산 했다고 항상 신고 끝 아님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사업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신고의무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 원천세 신고기한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혼동 금지.

11. 시험장 체크순서

- ① 소득 종류가 무엇인가
- ② 종합과세 대상인가
- ③ 연말정산으로 끝나는가
- ④ 확정신고 의무가 남는가
- ⑤ 신고기한이 5 월 말인지, 6 월 30 일인지, 다음 달 10 일인지 확인

12. 시험장 암기 문장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 월
- 성실신고확인 = 6 월 30 일
- 원천세 = 다음 달 10 일
- 지급명세서 = 3 월 10 일
- 간이지급명세서 = 다음 달 말일

24 년 제 117 회 기출

135.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가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X)

해설 연말정산을 각각 했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 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4 년 제 117 회 기출

136.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137. 금융소득(이자·배당)만 연간 3,000 만 원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X)

해설 금융소득이 2,000 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5 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5 년 제 121 회 기출

138.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O)

25 년 제 121 회 기출

139.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 월 10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X)

해설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2 월 말일까지입니다. (근로·퇴직·기타소득은 3 월 10 일)

25 년 제 121 회 기출

140.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141.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O)

24 년 제 113 회 기출

14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O)

24 년 제 117 회 기출

143.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X)

해설 보험설계사 등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5 년 제 124 회 기출

144.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이다. (O)

25 년 제 121 회 기출

145.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에 다음 연도 1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O)

25 년 제 121 회 기출

14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 월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X)

해설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 월 10 일까지입니다.

제125·126회 최신기출 보강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 매출세액

26년 제125회 기출

147.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X)

해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6년 제125회 기출

148.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한다. (O)

해설 의무발급 대상이 된 뒤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어도 계속 의무발급한다.

26년 제125회 기출

149.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적용한다. (O)

해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26년 제125회 기출

150.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은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될 수 있다. (O)

해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한다.

26년 제125회 기출

151.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한다. (X)

해설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제125·126회 최신기출 보강

종합소득금액 계산 /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6년 제125회 기출

152.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O)

해설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26년 제125회 기출

153.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O)

해설 연령 기준과 월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6년 제125회 기출

154. 해당 과세기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이다. (X)

해설 둘째 자녀 출산·입양 공제액은 50만원이다. 첫째 3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과 구분한다.

26년 제125회 기출

155.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연금저축액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X)

해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이다.

26년 제125회 기출

156.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종합소득공제 대상이다. (O)

해설 공적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한다.

제125·126회 최신기출 보강

부가가치세법 총칙 / 과세대상 거래

26년 제126회 기출

157.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면서 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다.

(O)

해설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다.

26년 제126회 기출

158.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한다.

(O)

해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6년 제126회 기출

159.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따른다.

(X)

해설 수출에는 영세율, 수입에는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한다.

26년 제126회 기출

160.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X)

해설 담보 제공은 재화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6년 제126회 기출

161. 계약당사자가 서로 재화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해설 교환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공급자가 된다.

제125·126회 최신기출 보강

종합소득금액 계산

26년 제126회 기출

162.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X)

해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26년 제126회 기출

16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O)

해설 기일 전에 해지하면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26년 제126회 기출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O)

해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적용한다.

제125·126회 최신기출 보강

원천징수

26년 제126회 기출

16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용한다. (X)

해설 일용근로소득은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다.

26년 제126회 기출

166.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O)

해설 미지급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다.

26년 제126회 기출

167.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다. (O)

해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이다.